

한국투자공사 투자정책서

제 정	2006. 6. 22
개 정(1)	2008. 1. 14
개 정(2)	2008. 11. 25
개 정(3)	2011. 3. 15
개 정(4)	2016. 6. 24

I. 개 관

1. 투자정책서의 개요

이 투자정책서는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대한민국 정부·한국은행 및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로부터 위탁 받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 기준 및 절차의 수립을 목표로 한다.

이 투자정책서는 공사의 자산운용과정 전반에 대한 지침으로서 이 투자정책서에 서 규정된 사항은 공사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이 투자정책서는 공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개관
- (2) 조직 및 역할
- (3) 투자정책
- (4) 자산배분
- (5) 외부서비스공급자
- (6) 리스크관리
- (7) 성과평가
- (8) 준법감시

2. 투자정책서의 효력

이 투자정책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효력이 발생된다.

운영위원회는 이 투자정책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함으로써 투자정책이 공사의 설립목적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이 투자정책서는 운영위원회, 공사 임직원, 외부자산운용사, 외부자문사, 수탁은행, 브로커 등 공사의 자산운용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된다.

II. 조직 및 역할

1.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공사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경영성과의 평가 등을 심의한다.

운영위원회는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공사의 중장기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 (2) 공사에 대한 자산위탁에 관한 사항
- (3) 공사의 연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4) 공사의 리스크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5) 공사가 동일 투자건으로 5억불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대체자산 직접투자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공사의 업무상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투자소위원회와 리스크관리 및 감독소위원회를 구성한다.

투자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1) 투자정책의 수립 및 변경
- (2) 연간 투자운용계획의 수립
- (3) 기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투자 관련 사항

리스크관리 및 감독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1) 리스크관리정책의 수립 및 변경
- (2) 연간 투자운용 성과 및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 (3) 기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리스크관리 관련 사항
- (4) 감사규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3. 이사회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등을 의결한다.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의 중장기 투자정책 수립 지원 등 공사업무를 통할한다.

4. 투자위원회

투자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하는 공사 임직원으로 구성하고 사장이 위원장이 된다. 투자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탁자산의 투자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외부자산운용사(전통 및 대체자산) 선정에 관한 사항
- (2) 대체자산 직접투자에 관한 사항
- (3) 기타 위원장이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투자관련 사항

5. 투자운용본부장

투자운용본부장은 투자업무를 총괄하며, 투자 관련 주요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투자운용본부장의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다.

- (1) 투자전략 및 자산배분계획의 수립
- (2) 연간투자계획의 수립
- (3) 포트폴리오 재조정
- (4) 투자정책서의 정기적 검토 및 수정안 작성

- (5) 투자성과 모니터링
- (6) 기타 투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운영위원회 보고

Ⅲ. 투자정책

1. 투자목표

공사는 적정 수준의 리스크 한도 내에서 운용기준(benchmark) 대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초과수익률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

2. 투자원칙

공사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산운용 원칙하에 지속 가능한 수익증대를 추구하되 1) 분산투자를 통하여 개별 시장 및 개별 자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2) 적절한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투자기회를 확보한다.

3. 투자자산군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군은 공사법에 규정된 증권, 파생상품, 외국환, 예금,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

4. 투자가이드라인

각 투자자산군에 대한 자산운용은 위탁기관이 제시하는 투자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자산을 재위탁할 경우, 위탁기관이 제시하는 투자정책 및 지침에 따라 『외부자산 운용사에 대한 투자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작성하여 외부자산운용사에 제시한다.

외부자산운용사에 제시하는 투자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투자목적
- (2) 벤치마크
- (3) 투자허용 자산(Eligible Asset Class)
- (4) 투자제한(Investment Limits)
- (5) 성과평가의 기준 및 방법

(6) 보고방법 등

5. 기타 고려사항

1) 파생상품

스왑, 옵션, 선물, 선도계약 등 파생상품은 공사의 장기적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 투자목적과 부합하여 명시적으로 투자가이드라인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다.

2) 증권 대여

공사는 지정된 증권대여대행기관을 통해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증권대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의결권 행사

공사는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탁기관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공사는 자산운용을 외부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 책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공사는 의결권 행사내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IV. 자산배분

1. 자산배분

자산배분은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등 투자환경에 대한 분석과 공사의 투자전략을 반영하여 투자자산군을 분류하고, 자산군별 투자비중을 결정하는 일련의 투자 프로세스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공사 위탁자산의 수익률과 위험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산배분은 전략적 자산배분과 전술적 자산배분으로 구분된다.

운영위원회는 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작성한 전략적 자산배분을 심의·의결한다.

공사는 전략적 자산배분의 허용범위 내에서 단기적인 시장상황의 대응을 위한 전술적 자산배분을 수행한다.

2. 포트폴리오 재조정

자산가치의 증감, 현금유출입, 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의하여 목표자산배분의 허용변동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 위탁계약에서 제시하는 재조정 기준에 따라 투자운용본부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야 한다.

V. 외부서비스공급자

1. 외부자산운용사

공사의 외부자산운용사 선정은 경쟁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공사는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최적의 외부자산운용사를 선정하여 투자함으로써 공사의 투자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한다.

공사는 외부자산운용사 선정결과를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는 외부자산운용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외부자산운용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포트폴리오 가치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체없이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경영상의 변화
- (2) 재무구조상의 중요한 변화
- (3) 사업방향의 변화
- (4) 주요 임원의 변동
- (5) 주요 운용인력의 변동
- (6) 법규 또는 규정의 위반

(7) 공사에 제공한 정보의 중대한 오류, 누락 또는 허위진술 등

2. 외부자문사

공사는 필요시 외부자문사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투 자 : 위탁자산의 투자와 관련된 투자 자문
- (2) 법 무 : 위탁자산의 투자와 관련된 법무 자문
- (3) 세 무 : 위탁자산의 투자와 관련된 세무 자문

공사는 투명성, 객관성, 경쟁 원칙 및 규정된 절차에 따라 외부자문사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외부자문사 선정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자문 서비스에 대한 숙련도 및 경험
- (2) 회사의 안정성 및 지속성
- (3) 서비스의 범위 및 품질
- (4) 자문비용 등

3. 수탁은행

이사회는 위탁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탁은행을 선정하여 거래의 결제, 기록 및 보고 등을 수행하게 한다.

공사는 투명성, 객관성, 경쟁 원칙 및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탁은행을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은행 선정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우수한 수탁업무 처리 능력
- (2) 적절한 위험관리체계
- (3) 수탁업무에 대한 숙련도 및 경험
- (4) 제공서비스의 범위 및 품질
- (5) 재무안정성
- (6) 수탁비용 등

단, 위탁기관이 별도의 수탁은행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Ⅵ. 리스크관리

1. 리스크관리 원칙 및 절차

공사는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리스크 부담을 최소화하고 손실발생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여야 한다.

공사의 리스크관리정책은 리스크관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된다.

위탁기관에서 별도의 투자지침을 제시할 경우 리스크관리 담당 부서는 동 내용을 기초로 하는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리스크관리정책 및 리스크관리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리스크한도를 설정하고 그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2. 리스크관리 보고

리스크관리 담당 부서는 실제 투자내역과 위험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여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규정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Ⅶ. 성과평가

1. 성과평가의 원칙 및 방법

공사는 포트폴리오의 가치 측정과 가치변동에 대한 요인분석 등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하여 위탁자산 투자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공사의 투자성과는 투자운용본부와는 독립된 성과평가 담당 부서에서 1차 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 평가를 수행한다. 이러한 성과평가 결과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의 성과평가 주요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정확하고 일관된 평가기준의 설정
- (2)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 절차의 확립
- (3)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의 측정 및 평가

공사는 ‘벤치마크대비 초과수익률’과 ‘위험조정성과지표’를 성과평가의 중심 지표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한다.

- (1)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수익률 및 위험 분석
- (2) 벤치마크 대비 비교 분석
- (3) 동종그룹(Peer Group)이 있는 경우, 동종그룹 내 상대평가

2. 성과모니터링 및 평가

공사는 다음과 같은 주기로 투자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한다.

- (1) 월 별 : 전체 포트폴리오와 개별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익 점검
- (2) 분기별 : 운용성과 및 시장상황 점검
- (3) 연도별 : 전체 포트폴리오와 개별 포트폴리오 및 모든 펀드매니저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평가

3. 성과보고

성과평가 담당 부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방식, 주기 및 절차에 따라 『성과평가 및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VIII. 준법감시

공사는 한국투자공사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자산 위탁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토록 한다.

공사의 내부통제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 (2) 위탁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 (3) 임원·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5) 임원·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원·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 (6) 임원·직원의 투자증권·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